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2. 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1월 23일 허정행 의원 외 7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16년 12월 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정행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마포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포구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성화의 기본이념과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을 구분함 (안 제4조)
-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재능기부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5조)
- 재능기부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함 (안 제6조)

○ 재능기부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2016.11.25.~11.3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구분, 재능기부의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재능기부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재능기부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재능기부를 접수 및 관리 운영과 연계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관협력이 용이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자원봉사가 생활화 되도록 재능기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공공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마포구에서는 2016. 11. 30.현재 70,943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238개 봉사단체에서 17,853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나눔포털 시스템(<http://nanumkorea.go.kr>)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분야별로 자원봉사활동을 분류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기 기술이라든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능 관리가 단순봉사자와 혼용되어 관리되고 있는 바, 재능 기부자를 단순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일반 자원봉사자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현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구로구만 제정을 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광역단체를 포함해서 23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능기부자 현황을 보면 전문 자원봉사단인 빨간우체통상담봉사단, 영시니어봉사단, 이미용봉사단, 건강지도봉사단, 교육강사봉사단, 집수리봉사단, 사회공헌봉사단, 법률상담, 전통매듭봉사단, 프랑스자수봉사단, 네일아트봉사단, 음악치료봉사단, 문인화봉사단 등이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폭넓은 재능기부봉사자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전문 재능이 필요한 수요자가 발생 시 나눔포털시스템에 재능기부 희망공고를 내서 재능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재능기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전문자원봉사 단체와 개인 재능 기부자를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하여 재능 기부자(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등 구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재능기부에 참여하여 마포구 재능기부 문화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